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 · 야간보호]**

2026년도

늘푸른 주간보호센터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제2조 (계약목적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가.계약 당사자
나.계약기간
다.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 2019.6.12.> 신설항목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평가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4. 서비스 시간은 기본적으로 월요일~토요일 오전 08:00~17:50으로 하되 수급자, 보호자의 원하는 시간과 요양보호사의 협의 후 신축성 있게 시간이 변경 운영될 수 있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통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다.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라.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마.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자.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차.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파.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서비스 내용)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나.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가. 신체활동지원

나. 일상생활지원

다. 정서지원

라. 인지활동지원

마. 여가활동지원

바.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6.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월한도액 ※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기초(의료)생활 수급권자
		일반	감경		
		15%	9%	6%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8	60,869	40,580	

-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 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3)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40% 감경 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9%를, 60% 감경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6%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4)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 5)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03시간 이상 - 0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06시간 이상 - 0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0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비급여 항목 ※ (이용자 전액 부담)

비급여종류	산출근거(일/월)	금액(1일)	비고
식재료비	중식 1식	1,000원	월 27일 기준 27,000원
간식	오후 간식 1회	500원	월 27일 기준 13,500원
기타	등급외자 1일 이용비용(5등급-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56,360	월 27일 기준 1,521,720원